2026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6. 3.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처

목 차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문항 ····· 3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4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4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4

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4

4.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5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 준수 노력 ····· 5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6

Ⅴ.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7

Ⅵ. 부록 ····· 8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 논술 등 필답고사, 선다형 고사를 운영하지 않음
-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 면접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
-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공교육정상화법」제16조 3호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번호	하위문항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면접 고사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	전계열														○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

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내부위원(7명): 입학처장, 입학사정센터장, 전공별 교수 5명
- 외부위원(2명): 고등학교 교사 2인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당연직)	김○○	입학처장	내부
위원(당연직)	김○○	입학사정센터장	내부
위원(임명직)	고○○	입학부처장	내부
위원(임명직)	이○○	교수(교직과)	내부
위원(임명직)	장○○	교수(간호학과)	내부
위원(임명직)	박○○	교수(수학교육과)	내부
위원(임명직)	최○○	교수(의학과)	내부
위원(임명직)	조○○	교사(주문진고등학교)	외부
위원(임명직)	김○○	교사(명륜고등학교)	외부

4.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운영: 2025. 7. ~ 2026. 2.
-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 2026. 2. ~ 3.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2026. 3. 31.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고교 교육과정 분석

- 의예과에 지원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의료윤리에 관련한 내용으로 집단토론을 실시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출제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 위촉사정관 내·외부 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교과와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함

3. 출제·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 전문 지식이나 교과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배제하도록 하는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
- 면접 질문 문항에 대해 학과별로 자체 검토를 진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가. 지원동기, 학업열정, 학교생활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므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과 관계없음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면접·구술 고사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계열	해당사항 없음				

2. 전형별 출제 문항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인 · 적성 면접은 개인 품성과 지원동기 등에 관한 질문 및 전공 적합성과 장래성을 종합 평가하는 등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
- 집단토론은 2가지 토론 주제로 각 주제 당 80-90분 내외로 총 160-180분 소요되며, 시작 후 문항을 배포하여 각 1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토론 주제는 일반 의료정책, 윤리, 생명 존엄성에 관련한 내용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음

출제범위	질문사항
인성영역	• 본인 소개와 지원동기, 학업 계획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
집단토론 (의학과(의예과)만 해당)	[유형1] #토론주제1. 최근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 출신 의대생을 선발하여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과정을 통하여 정책대안과 이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합의하시오. 1) 지역의사제 도입의 찬성 이유 2) 지역의사제 도입의 반대 이유 3)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찬·반 토론 및 합의 4) 합의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언 #토론주제2. 임신부 A는 분만일을 앞두고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고민하고 있다. 의사는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연분만을 권하였으나, 결국 임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자연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로 동료 의사가 법정 분쟁에 휘말린 사건을 감안한 결정이기도 하다.

	최근 5년 사이 자연분만 대비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을 우려한 방어진료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방어진료는 의료 비용 증가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산모의 신체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Q. 방어진료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환자, 제도의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논의하시오. [유형2] #토론주제1.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골다공 검사기기, X-ray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아직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의사들은 의료기기의 비용을 환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과정을 통하여 정책대안과 이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합의하시오. 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찬성 이유 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반대 이유 3)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찬·반 토론 및 합의 4) 합의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언 #토론주제2. 환자 A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지역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고 있으나 최근 담당의사가 바뀌었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기존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방문한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 A는 불안감을 느껴 병원을 옮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근 병원 시스템의 분업화와 의료진의 교체 빈도 증가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치료 효과와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적 또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시오.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종합적 평가를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과 평가 관련 요소 및 배율, 배점 등 투명한 정보 공개
- 면접위원 교차 검토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관련 면접 문항 제외
-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을 통한 면접위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 면접평가 예시 문항 공개를 통해 면접의 부담 완화

Ⅵ 부록

1.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대학별고사"란 우리 대학교가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신입생 선발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운영되는지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든 전형의 대학별고사를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예체능계열의 대학별고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 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개정 `17.5.23.)

제5조(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및 반영) 총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입학처장(위원장), 입학사정센터장 (개정 `17.5.23.)
2. 임명직 위원 : 대학별고사 출제 참여 교원 및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전공 전임교원, 입학사정관, 대학별고사 출제 참여 고교 교사 및 입학처 고교 자문교사, 학부모 중 7인 이상

② 임명직 위원은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

제3조(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 업무 주관 (개정 `17.5.23.)
3. 그 밖의 영향평가에 관련된 업무(개정 `17.5.23.)

제5조(영향평가 실시) ① 위원회는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영향평가 대상 전형과 고사를 확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우리 대학교의 노력 정도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정도

③ 평가위원별 평가 영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및 우리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